
제2024-4회

중앙운영위원회

2024. 2. 17.

심 의 안 건

심의안건 제1호 2024 학위수여식 졸업생 퇴장 사태에 관한 결의안

제 출 연 월 일 2024. 2. 17.

안 건 제 출 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성원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본회 차원의 한시적인 대외적 협의·활동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배경) 2024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 축하 중 졸업생이 일어나 피켓을 들고 R&D 관련 의제를 외쳤고, 대통령 경호인력에 의해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함.
- 이에 학부·대학원 총학생회 및 인권윤리센터에서는 2024 학위수여식 졸업생 퇴장 사태에 관련하여 성명문 발표를 추진하고자 함.
- 본 사태에 관한 성명문을 제작하고 있으며, 내용이 매우 가변적인 점, 성명문 발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의 사유로 2024 학위수여식 졸업생 퇴장 사태에 관한 성명문 등의 대응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성명문 게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함.
- 학생회칙 제61조제3항에 근거하여, 성명문 게시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 동의를 받을 예정임.

□ 참고사항

- 관련 규정

제61조(대외적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 당국 산하기구에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학생대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단, 당연직 학생대표위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학생대표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활동 내용을 모두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차원의 한시적인 대외적 협의·활동을 심의·의결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하면 협의·활동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동의를 받을 수 있다.

□ 의결문안

- 2024 학위수여식 졸업생 퇴장 사태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